

보험사 기본자본 K-ICS비율 현황 Update

- 지표 개선 난항, 중장기에 걸쳐 관리 부담 지속될 전망

2026.09.02.

송미정 금융1실 수석연구원 김태현 금융1실 실장
02.368.5591 02.368.5319
mjsong@korearatings.com thkim@korearating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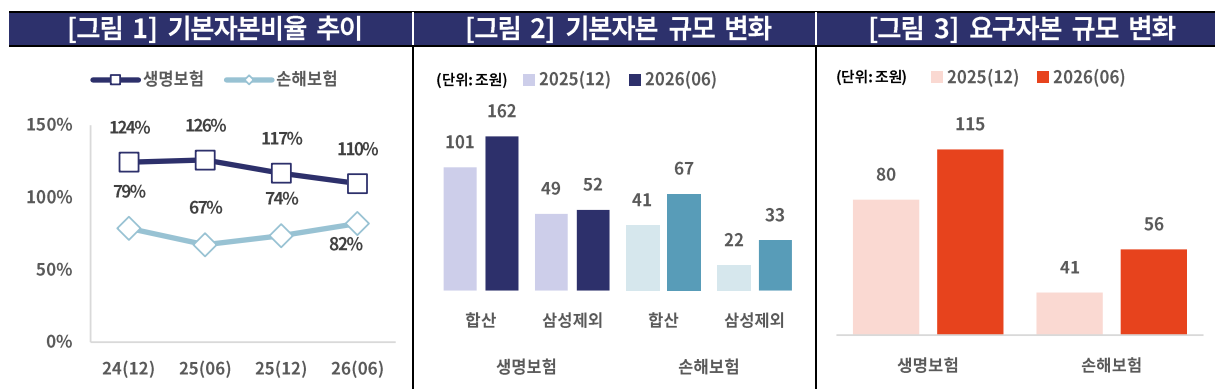
보험업계의 기본자본 K-ICS비율(이하 '기본자본비율') 관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6년 6월말 22개 생명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 단순평균은 110%로 2025년말 대비 7%p 하락했으며, 손해보험업계 기본자본비율은 점진적인 상승세이나 삼성화재를 제외한 9개사 단순평균은 6월말 67%에 그쳐 권고수준(80%)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해지위험액 등 요구자본의 급격한 증가가 기본자본비율 개선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한도 소진으로 순자산에서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26년 6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하회하는 보험사는 6개사(KDB생명, 하나생명, iM라이프, 흥국화재, 롯데손보, 하나손보)이다. 기본자본 규제가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단기적인 자본확충 압력은 크지 않지만 중소형사들의 높은 이익변동성, 제도변화 및 금리등락에 대한 높은 자본민감도를 고려하면 중장기에 걸쳐 관리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총자본 K-ICS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관련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다수 보험사들도 자본관리전략 수립 시 경과조치 소멸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별회사의 기본자본비율 제고 수단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업계 전반에 걸쳐서도 뚜렷한 개선요인이 없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듀레이션갭이 양(+)으로 반전되는 회사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상승은 상당수 회사의 기본자본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법정적립금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한 회사의 경우 신계약 증가가 기본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기본자본비율 변동

보험업계의 기본자본비율 관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생명보험업계의 기본자본비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2026년 6월말 22개 생명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 단순평균은 110%로 2025년말 대비 7%p 하락했으며,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으로 대규모 평가이익이 발생한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업계평균의 하락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10개 종합손해보험사 단순평균이 같은 기간 74%에서 82%로 상승했으나, 삼성화재를 제외한 9개사 단순평균은 67%에 그쳐 권고수준(80%)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하다.



주) 기본자본비율 추이는 22개 생명보험사, 10개 종합손해보험사 단순평균
자료) 각사 경영공시, 한국기업평가 재구성

최근 기본자본비율 개선을 제약한 주된 요인은 요구자본의 급격한 증가다. 2026년 상반기 중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공히 기본자본 규모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제외하면 증가 폭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방향성은 유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요구자본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기본자본비율을 끌어내렸다. 금리가 상승하며 해지위험액이 증가한 영향이 가장 컸고, 증시 호조로 주식 익스포저가 증가하며 주식위험액과 자산집중위험액도 증가했다.

순자산에서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26년 상반기 업계 전반적인 이익규모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평가손익 개선으로 순자산 규모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기본자본 증가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항목이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분류되지만, 준비금 적립한도(이익잉여금) 소진으로 적립이 불가능해진 회사는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이 증가한다. 최근 적립한도 소진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회사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필요액이 해당 분기 순이익(이익잉여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2. 개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현황과 규제 대응력

2026년 6월말 기준 6개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규제수준(50%)을 하회한다. KDB 생명, 하나생명, iM 라이프, 흥국화재, 롯데손보, 하나손보로, 모두 중소형사에 해당한다. KDB 생명, 하나손보의 경우 2025년 4분기 각각 5,000억원,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2025년말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61%, 41%까지 상승했으나, 2026년 들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6월말 각각 33%, 22%를 기록했다. 하나손보는 2026년 7월에도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자본비율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생명(14%)과 롯데손보(-5%)는 상반기 중 기본자본이 급감하며 비율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iM 라이프(30%)와 흥국화재(48%)는 전년말 대비로는 소폭 상승했으나 규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표 1] 생명보험업권 기본자본비율 현황(2026.06)

구분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라이나	농협	KB라이프	Metlife	동양	흥국	미래에셋
총자본 K-ICS비율	경과조치전	208%	168%	155%	210%	349%	217%	223%	232%	205%	159%	155%
	경과조치후	208%	168%	201%	210%	349%	396%	223%	232%	205%	206%	155%
기본자본 K-ICS비율	경과조치전	177%	57%	79%	100%	258%	70%	137%	128%	84%	83%	99%
	경과조치후	177%	57%	115%	100%	258%	142%	139%	128%	84%	110%	99%
	(TAC효과제외)	177%	57%	115%	100%	258%	142%	139%	128%	84%	110%	99%
규제수준 대비		127%	7%	65%	50%	208%	92%	89%	78%	34%	60%	49%
구분		AIA	DB	ABL	푸본현대	KDB	IBK연금	하나	iM라이프	BNPPC	Chubb	교보LP
총자본 K-ICS비율	경과조치전	176%	203%	108%	80%	79%	122%	120%	126%	196%	158%	163%
	경과조치후	176%	305%	157%	211%	182%	197%	138%	184%	196%	256%	218%
기본자본 K-ICS비율	경과조치전	160%	77%	43%	30%	-26%	23%	10%	15%	173%	40%	116%
	경과조치후	160%	116%	74%	132%	33%	51%	14%	30%	173%	64%	155%
	(TAC효과제외)	160%	116%	54%	41%	-37%	30%	11%	30%	173%	64%	155%
규제수준 대비		110%	66%	24%	82%	-17%	1%	-36%	-20%	123%	14%	105%

자료) 각사 경영공시, 한국기업평가 재구성

[표 2] 손해보험업권 기본자본비율 현황(2026.06)

	구분	삼성	DB	현대	메리츠	KB	한화	흥국	농협	롯데	하나
총자본	경과조치전	283%	204%	209%	230%	187%	185%	158%	198%	130%	152%
K-ICS비율	경과조치후	283%	204%	209%	230%	187%	228%	201%	255%	162%	152%
기본자본	경과조치전	220%	96%	84%	83%	76%	67%	28%	83%	-6%	22%
K-ICS비율	경과조치후	220%	96%	84%	86%	76%	91%	48%	103%	-5%	22%
	(TAC효과제외)	220%	96%	84%	86%	76%	91%	48%	103%	-5%	22%
규제수준 대비		170%	46%	34%	36%	26%	41%	-2%	53%	-55%	-28%

주) 손해보험사 중 TAC 경과조치 적용회사 없음

자료) 각사 경영공시, 한국기업평가 재구성

기본자본 규제가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단기적인 자본확충 압력은 크지 않지만 중소형사들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자본 규제는 2027년 1월 시행 이후 2035년말까지 경과조치가 병행된다. 2027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시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상향되어 2036년 3월말 50%를 충족하도록 분기별로 최저이행기준을 설정한다. 최저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1년 경과한 시점에 최저이행기준을 다시 하회하는 경우 적기시정 조치를 부과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시점에 기본자본비율이 낮아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이익창출이 안정적이고 요구자본 통제가 가능하다면 점진적으로 비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자본비율이 미흡한 회사는 대부분 중소형사로, 이익창출의 안정성이 낮고 제도변화, 금리등락 등에 따라 순자본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또한, 총자본 K-ICS 비율 산출 시 자본감소분 관련 경과조치(TAC)를 적용하고 있는 5개사(ABL, 푸본현대, KDB, IBK 연금, 하나생명)는 해당 경과조치 효과가 2032년 소멸되므로 이를 감안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요구자본 산출 관련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다수 보험사들도 자본관리전략 수립 시 경과조치 소멸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2026년 하반기 전망과 주요 모니터링 요소

단기간 내 뚜렷한 개선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사의 경우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익창출을 통한 자본누적이 기본자본 증대로 이어지겠지만, 중소형사의 이익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금융지주계열 중소형사의 경우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기대할 수 있으나, 2025년 하반기 이후 KDB 생명, 하나손보, 푸본현대생명이 이미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증자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iM 라이프, IBK 연금, 농협손보, 하나생명 등 일부 회사에 국한된다.

기발행 신종자본증권이 존재하는 추가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표 3]. K-ICS 도입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K-ICS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증권 조기상환 시 기본자본이 감소하고 기본자본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기본자본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차환은 어렵다. 이자지급 제한(배당가능이익 내)으로 기본자본 자본성증권 발행 가능 회사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해당 증권은 기본자본비율 요건(80% 이상 유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므로 기본자본비율이 80%를 하회하는 회사의 기본자본 자본성증권 투자수요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표 3] 경과조치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내역

회사명	발행액 (억원)	기본자본 비율	기본자본 비율(차감)	Call 시점	Tier 1신종 발행 가능여부 추정
교보생명	11,149	115.4%	101.7%	2026.09(4,700억원), 2027.06(USD 5억)	O
코리안리	3,300	175.7%	161.5%	27.05(2,300억원), 27.10(1,000억원)	O
메리츠화재	1,800	86.1%	83.2%	27.04(700억원), 27.06(1,100억원)	O
농협생명	2,500	141.8%	128.5%	2027.09	X
흥국화재	1,200	47.6%	40.8%	27.03(200억원), 27.05(300억원), 27.08(700억원)	X
한화손보	2,350	91.0%	82.8%	27.05(1,500억원), 27.09(850억원)	X
iM라이프생명	950	29.5%	22.2%	2027.03	X
KB라이프생명	500	138.7%	136.8%	2027.06	O
흥국생명	500	110.2%	107.9%	2027.03	△
롯데손보	460	-5.4%	-8.1%	2026.12	X
푸른현대생명	400	132.4%	129.1%	2027.11	X

주) 기본자본비율은 2026.06 기준, 기본자본비율(차감)은 26.06 신종자본증권 발행액(기본자본 인정분) 차감하여 산출, Tier1 신종 발행가능여부는 배당가능이익(2026.03) 유무에 따라 판단

자료) 각사 경영공시, Seibro,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기업평가 재구성

금리상승 역시 기본자본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험사의 경우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을 상회하는 재무구조(음의 듀레이션갭)를 보유하고 있어 금리상승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리 및 미국 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듀레이션갭이 양(+)의 값으로 반전되는 회사가 증가했다. 이 경우 금리가 상승할 때 순자산 감소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는 기본자본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위험액별로 상이하나, 최근 해지위험액의 빠른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한도 소진 회사의 경우 신계약 증가가 기본자본비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이익잉여금 내에서 적립하므로, 이를 초과한 상태에서 신계약 증가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필요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간 발생한 순이익(이익잉여금 증가분) 이상으로 적립할 수 없다. K-ICS 산출기준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부족분(해약환급금-K-ICS 보험부채) 중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완자본으로 재분류되는데, 부족분 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준비금 증가가 수반될 수 없으므로 보완자본 재분류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즉, 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대신 보완자본 분류금액이 늘어나므로, 총자본 K-ICS 비율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본자본비율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2026년 6월말 기준 생명보험 7개사, 손해보험 4개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 적립액 합계가 이익잉여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신계약 확대 시 기본자본비율 관리 측면의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 4] 법정준비금 적립에 따른 이익잉여금 소진율(2026.06)

(단위: 억원, %)

생명보험	해약준비금	잉여금소진율	생명보험	해약준비금	잉여금소진율	손해보험	해약준비금	잉여금소진율
DB생명	22,043	100%	KB라이프	14,718	80%	흥국	5,957	100%
IM라이프	2,474	100%	라이나생명	40,277	69%	롯데	3,257	100%
하나생명	969	100%	AIA생명	7,586	57%	농협	8,088	99%
KDB생명	43	100%	교보생명	31,033	46%	한화	28,042	98%
한화생명	73,045	98%	흥국생명	6,735	45%	KB	40,880	71%
동양생명	13,578	90%	삼성생명	31,260	21%	현대	43,603	68%
미래에셋생명	13,889	90%	처브라이프생명	0	N/A	메리츠	35,364	67%
농협생명	23,467	87%	푸른현대생명	0	N/A	DB	52,752	61%
신한라이프	56,492	84%	교보P	0	N/A	삼성	52,170	56%
메트라이프	27,330	83%	BNPPC	0	N/A	하나	0	N/A
IBK연금	2,840	80%	ABL생명	0	N/A			

주) 잉여금소진율=(대손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보통준비금)/이익잉여금

자료) 각사 경영공시, 한국기업평가 재구성

당사는 기본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하회하거나 규제수준에 근접한 회사들을 중심으로 기본자본비율의 변동 및 규제 대응전략을 점검 중이다. 이 중 일부 회사는 유상증자 및 기본자본 자본성증권 발행이 어려워 기본자본 관리 전략이 재보험을 활용한 요구자본 축소, ALM 강화를 통한 기본자본 변동성 완화 등으로 제한되고 있어 중점 모니터링 대상이다. 기본자본비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정 여부와 보험사별 영향 수준, 업계 전반의 기본자본비율 등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기본자본비율의 평가지표 도입 여부 등 신용평가 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별첨 1] 기본자본 규제 개요

구분	상세내용	
규제수준	적기시정조치 요건	· 경영개선권고: 기본자본 K-ICS 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경영개선요구: 기본자본 K-ICS 비율이 0% 미만인 경우
	기본자본 자본성증권 조기상환 요건	· 기본자본 K-ICS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이면 대체자본조달이 실행 또는 예정된 경우에만 기본자본 자본성증권 조기상환 가능
시행일정 및 경과조치	· 2027년 1월 1일 시행 · 2035년까지 경과조치 적용 : 2027년 3월말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2036년 3월말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하도록 분기별 최저이행기준 부과(회사별 최저이행기준 상이)	

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별첨 1-1] 경과조치 적용 예시

구분	27.03	27.06	27.09	27.12	28.03	28.06	28.09	28.12	28.03	28.06	28.09	28.12	...	36.03
최저이행기준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0%
기본자본K-ICS비율	14%	13%	16%	19%	19%	20%	21%	19%	16%	20%	22%	21%	...	?
조치	최저이행 기준 부과	위반	충족여부 무관 →이행기간		충족	충족	위반	충족여부 무관 →이행기간		미충족	→ 적기시정조치 부과 종료←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국기업평가 재구성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 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견으로 당사의 공식적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3: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